

---

# 입 법 정 보

---

2019-19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 목 차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5
5.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
6.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
7.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7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8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9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9
11.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정(안) (해양경찰청).....	10
12.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
13.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
14.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3
16.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14
17.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6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6
19.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7
20.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8
2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9
2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9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1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2
27.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3
2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4
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4
3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5
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6
3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6
33.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7
3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27
3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

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30
3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1
39.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1
4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2
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2
4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3
4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33

# 정부입법 예고

##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9. 30.                      • 마감일자 : 2019. 10. 21.
-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왔던 일회용기저귀 중 일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함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하여 별도 수집 운반, 보관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일회용기저귀를 운반할 때 갖추어야 할 장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회용기저귀의 보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악취, 세균증식 등 위생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임(안 별표5, 별표 7)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9. 30.                      • 마감일자 : 2019. 11. 11.
- 2020년 정부 예산안은 25~64세 수급자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30%를 적용함을 담고 있음.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현행 시행령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현행 25~64세 수급자 대상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1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게 함(안 제5조의2제11호)

##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9. 30.                      • 마감일자 : 2019. 11. 11.
- 창업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애로사항 해소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화 함
- 주요내용
  - 가. 객실별로 각각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에서의 복수 숙박영업(통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면제하여 중복검사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담을 경감하고 버스 및 택시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자격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신규 취업하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면제(안 규칙 제49조제3항제1호다목)

1) 검사비용(2만5천원)을 내고, 동일 검사를 다시 받는 중복규제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의 부담증가와 인력난 가중 초래

5.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9. 30.
- 마감일자 : 2019. 11. 11.

○ 감리자가 주택건설공사의 예정공정표를 검토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마감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정공정 대비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만회대책 검토 및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 강화(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감리자의 업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 확인과 예정공정 대비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만회대책 검토 및 대책 이행 여부 확인 업무 추가

6.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9. 30.
- 마감일자 : 2019. 11. 11.

○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를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공사 중 발생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용검사 시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곤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내용을 사용검사권자에

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주택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마감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착공신고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주요공정 완료예정 시기에 해당 공정 완료 여부와 공사 지연 발생 시 만회대책 및 그 이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공정관리 지도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변경내용 통보 의무화(안 제13조제7항 신설)

1)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른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착공신고 시 예정공정표 제출 의무화(안 제15조제2항제5호 신설)

1) 사업주체가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감리자가 검토 확인한 예정공정표 추가

다. 주요 공정 완료 여부 및 공정 만회대책 등 보고(안 제18조제4항 신설)

1) 감리자는 주요 공정 완료 여부를 예정공정표 상 완료예정 시기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사 지연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라. 공사완료 여부 확인 주요 공정 규정(안 제18조의3 신설)

1) 지하구조물 공사 등 공사완료 여부에 따라 후속공사 및 현장 관리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공정을 주요 공정으로 규정

## 7.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 예고일자 : 2019. 10. 1.
- 마감일자 : 2019. 11. 11.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근거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의 수립과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농촌지도사업의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업무 추가(안 제2조제2항)

1) ICT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근거 반영(안 제3조 제1항)

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국가과학기술 주요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근거 마련

##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10. 1.

• 마감일자 : 2019. 11. 11.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법인이 설립한 경우 대표자 외에 법인 명칭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법인이 설립한 경우 대표자 외 법인명칭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4조제2항제2호)

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52조의2제3항 신설)

다.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이 일몰해제에 해당되어,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함(안 제52조의3제1항 삭제)

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하더라도 지정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위반사항이 ‘3차 이상’ 인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별표 1])

##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0. 2.                      • 마감일자 : 2019. 11. 1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중 가축분뇨처리업 근거규정 조문의 단순 변경사항을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유사업종인 하수도법 상의 분뇨수거·운반업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민생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가축분뇨처리업의 근거 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9조제3호 개정)
  - 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하수도법 상의 분뇨수거·운반업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변경(안 별표5)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9. 10. 2.                      • 마감일자 : 2019. 11. 11.
- 법에서 정한 감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에서 정한 감면에 대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는 요건 신설(안 제2조제1항)
    - 1) 경제 위기, 재난대응, 세목 및 조세형평성 등의 사유로 행안부 허가를 1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나. 감면조례 총량비율 추가 고시 규정 신설(안 제2조 제9항)
    - 1) 국가정책적 필요 등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조례 감면 시 감면조례 총량비율 추가 고시
  - 다. 감면 취득세 추징 시 이자상당가산액 운영 규정 신설(안 제123조의2)
    - 1) 이자상당액 적용 방법(1일 10만분의25)과 제외 사유(파산, 천재

지변 등)

## 11.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정(안) (해양경찰청)

- 예고일자 : 2019. 10. 2.                      • 마감일자 : 2019. 11. 15.
- 「해양경찰법」(2019.8.20. 법률 제16515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종합·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단체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소관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규정(안 제5조)

## 12.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9. 10. 2.                      • 마감일자 : 2019. 11. 13.
- 전문기관이 특허청의 특허심사를 지원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임직원의 특허관련 대리 업무 등 변리사 업무를 제한 중이나, 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전문기관의 지분을 가진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에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분을 가진 자 중에서도 변리사 업무와 관련된 자가 없도록 규정(안 제8조의2)

## 13.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9. 10. 2.                      • 마감일자 : 2019. 11. 11.
- 산후조리업 종사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대상 범위에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도 추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



별 교육시간, 보고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임신부나 영유아의 사망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내용 구체화(안 제16조의2)

- 1) 산후조리원의 감염·질병 예방 조치 등을 위해 청소 등 환경관리, 임신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에 대한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별표 4를 신설

나. 이송사실보고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보고(안 제16조의3, 같은 조의 4)

- 1) 산후조리업자는 감염 또는 질병의심 및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과 소독 및 격리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보고 하도록 함

다. 건강기록부 등의 관리(안 제16조의5)

- 1) 건강기록부, 감염·질병 예방조치 및 기록사항, 이송사실 보고사항,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 보고사항을 보존하고, 산후조리원 폐업신고 시 관할 보건소로 기존 건강기록부 이외에 기록사항 등을 추가 이관하도록 함

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안 제17조)

- 1) 산후조리업을 신고하려는 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건강관리인력, 영양사, 취사부, 미화원 등 그 밖의 인력에 대한 산후조리교육 대상자를 세분화
- 2) 산후조리교육에 대한 대상자별 교육 이수시간을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하려는 자는 8시간 이상, 건강관리인력은 4시간 이상, 그 밖의 인력은 1시간 이상으로 교육대상자별교육시간을 명확히 구분

마.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의 범위 신설(안 제18조의3)

- 1)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신부나 영유아의 사망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범위를 규정



바. 서면제출시 전자적 방법 허용(안 제16조 및 제19조)

- 1) 자율규약 심사요청 및 분쟁조정 신청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사. 분쟁조정 거부·중지사유 삭제 (안 제22조 및 제23조)

- 1) 분쟁조정 거부·중지사유가 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거부·중지사유를 삭제함.
- 2) 법상 분쟁조정 처리유형이 거부·중지·종료에서 각하·종료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상 거부·중지라는 표현을 각하로 변경함.

## 16.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9. 10. 4.
- 마감일자 : 2019. 11. 13.

○ 선박으로부터 해양·대기 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조선산업 및 新산업 육성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법률 제16167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 연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에 관한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에 관한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안 제2조)

-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도록 규정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안 제3조·제4조)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계획에는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다. 보급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안 제5조·제6조)

- 1)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계획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라.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7조·제8조·제9조)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각각 구성하도록 하고, 각 정책협의회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지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

마.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기준, 방법 및 지원중단 근거 등 마련(안 제12조)

- 1)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거나 소유한 자 중에서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하는 자, 도선사업을 하는자, 원양어업을 하는 자 등 해양수산 관련 법에 근거한 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비용 또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아울러, 지원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

바.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에 관한 지원(안 제13조)

- 1)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생산·공급하거나,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소요비용 및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사.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방법, 지원중단 근거 등 마련(안 제14조)

- 1) 환경친화적 선박이 아닌 일반 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그 선박소유자에게 소요비용 및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아울러, 지원 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

아.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15조)

-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일반 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도록 규정

## 17.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0. 7.                      • 마감일자 : 2019. 11. 18.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불법 투기·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불법폐기물 처리를 도모하는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대상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불법 투기·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신설(안 별표5의 제9호 신설)
  - 나.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매립한 폐기물량의 비율이 5% 미만인 폐기물처리업자 등도 중소기업 감면대상으로 확대(안 별표5의 제9호 비고)
  - 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신고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할 증명자료를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분기별 시험분석 결과”로 명확히 하여 혼동 방지(안 별표6)

##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9. 10. 8.                      • 마감일자 : 2019. 11. 18.
-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18.10.7)의 후속대책으로 「석유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19.2.14, 국무총리 주재)이 마련되었으며,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정기검사 기간의

중간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고위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불꽃을 감지하는 감지기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신규 종사 후 교육 시기를 세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현행 11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보완을 위해 중간 시기인 4년마다 실시하는 중간정기 검사를 도입함(안 제70조 제1항)
- 나. 인화방지망의 규격을 구체화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장치 설치하도록 함(안 별표6 VI. 제7호 가목 3)
- 다. 일정규모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토록 함(안 별표17 II. 제1항 표 제5호란 신설, 제2항 마목 및 제3항 신설)
- 라.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시기 세분화 및 교육 내용의 구체적 명시(안 별표 24 제1호 표, 제5호 본문)

## 19.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9. 10. 8.
- 마감일자 : 2019. 11. 18.

○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식대 등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감면지원을 확대하여 위탁병원 지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나,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이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이처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기준을 명확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보훈병원 감면대상자 감면 항목 확대







##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9. 10. 8.
- 마감일자 : 2019. 11. 1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운송차주 등을 추가하고,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업재활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급여 연금지급 기준을 개선하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및 재요양 인정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적용 대상 확대(안 제125조)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전속성 및 보호필요성이 높은 직종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및 화물차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함.
  -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신고 간소화(안 제126조)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산재보험 입·이직신고제도와 유사한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로 입·이직 신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도 직접 입·이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적용 대상 확대(안 제122조제1항)
    - 1) 현재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해외사례 및 유사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을 고려하여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함.
  - 라.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인정기준 합리화(안 제36조제3호)
    - 1)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을 법원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의학적 기준보다는 업무관령성에 따라 판단하도록 개선함.
  - 마. 재요양 인정기준 개선(안 제48조제3호 및 4호)
    - 1) 재요양 요건 중 제3호와 제4호의 내용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정비하여 재요양



해 따로 장애등급을 결정할 경우의 장애급여를 비교하여 더 높은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다. 용어정비(안 제47조제1항 및 별표4)

- 1) ‘정상인’ 이라는 용어를 ‘비장애인’ 으로 개선하여 장애를 입은 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제거함.

라. 직업훈련 신청기간 연장(안 제55조제1항)

- 1) 재해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독려 및 보험급여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한 모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27.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0. 10.

• 마감일자 : 2019. 11. 19.

- 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가 시·도 지사에게 납부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징수자와 납부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용료의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여 피허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를 면제하는 최소금액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 으로 하되, 실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사용자 중 희망자에 한해 ‘사용량’ 적용 허용(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 나. 하천수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연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57조제4항)
- 다. 1건의 하천수 사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안 제57조제3항 및 별표 3의2)

## 2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0. 10.                      • 마감일자 : 2019. 11. 21.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구매·임차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대상기관의 범위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행정·공공기관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안 제1조의2 신설)
    - 1) 대기환경보전법에 저공해자동차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한다.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안 제52조의2 신설)
      - 1)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연간 자동차 판매수량의 평균이 4,500대 이상인 자동차판매자로 규정
  - 다. 무공해자동차 정의(안 제52조의3 신설)
    - 1)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를 무공해자동차로 정의
  - 라. 저공해자동차 구매기관의 범위 등(안 제52조의4 및 제52조의5 신설)
    - 1)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사·공단, 공직유관단체 등의 기관 중에서 자동차 보유수량이 10대 이상인 기관으로 규정
  - 마. 업무의 위탁(안 제66조제8호의8 및 제8호의9 신설)
    - 1)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접수 및 검토·승인, 보급실적 접수·확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계획서 접수 및 구매·임차실적 확인 등의 업무를 위탁

## 2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0. 10.                      • 마감일자 : 2019. 11. 21.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구매·임차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저공해자

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제출 및 승인절차,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방법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행정·공공기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제8조의3 및 별표 5의2 신설)

1) 대기환경보전법에 저공해자동차 정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

나.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제출·승인 및 보급실적의 제출(안 제79조의10부터 제79조의12까지 신설)

1)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보급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절차, 보급실적 제출방법 등을 규정

다.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설정(안 제79조의13 신설)

1)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매·임차비율을 100퍼센트로 설정

라. 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 통지시간 완화(안 별표 8 제3호라목)

1)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매·임차비율을 100퍼센트로 설정

### 30.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9. 10. 10.                      ● 마감일자 : 2019. 11. 20.

○ 2019년도에 기한이 도래한 규제 재검토 조항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몰해제 및 일몰주기 변경(안 제10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주기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낮거나 비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 주기적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 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10. 10.                      • 마감일자 : 2019. 11. 19.
- 현대의 급격한 사회 경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임대차에 관한 법제 역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법제 개선에 임대차 시장 상황의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법무부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이와 관련된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2)
  - 나.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6 및 제19조)
  - 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 3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9. 10. 10.                      • 마감일자 : 2019. 11. 19.
- 현대의 급격한 사회 경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임대차에 관한 법제 역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법제 개선에 임대차 시장 상황의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법무부는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 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0조)

**33.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9. 10. 10.                      ● 마감일자 : 2019. 11. 19.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창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하려는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와 보수교육 주기를 단축하여 축산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6126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 예고일자 : 2019. 10. 10.                      ● 마감일자 : 2019. 11. 19.
- 현행 배출 전망치 감축목표 설정 방식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되고 일관된 목표를 유지함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방식을 “배출 전망치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특정연도 대비 감축량)”으로 변경(안 제25조제1항)
  - 나. 산림탄소흡수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 계산에 포함(안 제25조제2항)

### 3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9. 10. 10.

• 마감일자 : 2019. 11. 19.

○ 연구활동종사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 및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연구실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등록요건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확대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연구실 사고 조사반’, ‘연구실 안전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 훈령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안 제16조, 안 제18조)

1) 기 제정 시행 중인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08.7월),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17.12월)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2) 연구실 안전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훈령 제정 예정)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나. ‘저위험연구실’ 및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완화(안 제7조)

1) 가스 생물체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실로써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의 일상점검 실시주기를 ‘매일’에서 ‘일주일’로 완화하고 연 1회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점검 면제

2)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정기점검 면제

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전문강사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실시자 자격기준 개선(안 제17조)



- 2) 경미·아차사고가 대부분인 연구실 사고의 특성 및 중대 연구실 사고 보고에 대한 현장부담 등을 반영하여 ‘부상자 5명 이상 사고’를 ‘3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5명 이상 사고’로 변경
- 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간소화 (안 제3조의2)
- 다. 연구활동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사고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부담 예정인 의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안 제7조)
- 라. 현장부담 완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연구실사고’로 보고하도록 사고보고 기준 개정 (안 제8조의2)
- 마. 특수건강검진 실시 예외 규정 마련 및 용어정비(안 제10조)
  - 1) ‘임시’ 및 ‘단시간’ 연구를 수행하는 실습생이 상당수 존재하는 연구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검진 예외’ 규정 마련
  - 2) ‘요(尿)’를 현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소변’으로 변경
- 바. 위험정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정기교육 시간을 ‘반기별 3시간’에서 ‘연 3시간’으로 완화 (안 별표2)
- 사. 연구실사고를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표 양식 개선 (안 별지 제10호)
- 아. 국조실 일몰규제 심사결과(‘19.6월)에 따른 일몰해제 반영 (안 제11조)

### 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9. 10. 11.                      ● 마감일자 : 2019. 11. 20.
- 목재제품의 이용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목재를 안전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경미한 규격·품질 기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원료인 “목재” 를 안전성 평가 대상에 포함(안 제17조)

나.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결격사유 규정(안 제20조의3)

1) 과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등에 대하여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 함

다. 목재제품 규격·품질 기준 위반자등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45조, 제47조)

1) 안전성평가 위반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자 처벌규정의 대상 품목에 “목재” 추가

2) 처벌 규정중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3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0. 11.

● 마감일자 : 2019. 11. 2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성능 개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에너지성능 공개 확대

1)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을 확대(300→150세대)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 39.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0. 11.

● 마감일자 : 2019. 11. 20.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에서는 주택(단독 공동) 및 업무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인증 신청이 가능 하나, 그 외 용도 건축물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바,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성능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증 적용대상 제한 해소

- 1)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은 희망하는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4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9. 10. 11.                      • 마감일자 : 2019. 11. 2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는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확대 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 중으로,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리모델링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어 적용대상 건축물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로에너지 의무화대상 규정

-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반영

#### 4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0. 11.                      • 마감일자 : 2019. 11. 2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상환유예 받은 채무자(대학생·실직·폐업·육아휴직자)의 상환 유예된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자금 대출을 상환유예 받은 채무자의 상환 유예된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상환유예 기간 만료일로 명확화(제10조의2제5항)

## 4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0. 11.                      • 마감일자 : 2019. 11. 2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18.3.13.) 및 「국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국세청장의 학자금 상환업무 추진과정에 개선이 필요한 시행규칙 상의 별지서식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18.3.13.)으로 의무상환액을 상환유예 받는 대상자가 대학생에서 대학생·실직·폐업·육아휴직자로 확대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중단 통지를 해야 하는 대상을 대학생·육아휴직자로 확대(제11조제3항제3호)
  - 나.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통지할 때 원천공제의무자용 서식을 사용하도록 근거규정 마련(제19조제2항)
  - 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18.3.13.)에 따라 학자금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한 의무상환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미리납부’ 방법 안내 및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서식 변경(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 라.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채무자 재산의 체납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지서 서식 변경(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 마. 기타 국세청장이 학자금 상환업무 추진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서식 변경(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신설(별지 제9호의2서식)

## 4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9. 10. 11.                      • 마감일자 : 2019. 11. 20.
- 사립학교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 전체를 한글로 적고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를 보다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한자어를 한글로 전환, 한글만 이해가 어려운 경우 병기표현
- 나.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
- 다. 권위적 용어 및 어색하거나 문법에 어긋난 표현 정비